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~ ④ (생 략)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 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 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또는 국가기술 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. ⑥ (생 략)	제9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 -----.
제11조(평가기관 지정) ① ~ ③ (생 략)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 우 위탁 사무의 내용, 근거, 평 가기관, 위탁기간 등을 <u>산업통 상자원부</u>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제11조(평가기관 지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 부</u> ----- ----- -----.
제13조(관리 · 감독) ① · ② (생 략)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	제13조(관리 · 감독) ① · ② (현행 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

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또 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④ · ⑤ (생 략)	-----.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